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 | | |
|--|--|---|
| <p>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선언서 (37 CFR 1.63) DECLARATION FOR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37 CFR 1.63)</p> | | 변호사 문서 번호 Attorney Docket Number |
| <p>최초 출원 시 선언서 제출 Declaration Submitted With Initial Filing</p> <input type="checkbox"/> | | 선발명자 이름 First Named Inventor |
| <p>또는 OR</p> | | 최초 출원 후 선언서 제출 (추가비용 (37 CFR 1.16(f) 요구됨) Declaration Submitted After Initial Filing (surcharge (37 CFR 1.16(f) required)) |
|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기재하십시오. COMPLETE IF KNOWN | | |
| <input type="checkbox"/> | | 출원 번호 Application Number |
| <input type="checkbox"/> | | 출원 일자 Filing Date |
| <input type="checkbox"/> | | 분야 단위 Art Unit |
| <input type="checkbox"/> | | 심사관 이름 Examiner Name |

본인은 (1) 각 발명자의 거주지, 우편용 주소 및 국적이 아래 각각의 성명 옆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며 (2) 아래 기재된 발명자(들)의 성명이 이 양식을 통해 특허신청된, 그리고 아래 명칭의 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발명사항의 원래 및 최초 발명자(들)임을 선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1) Each inventor's residence, mailing address, and citizenship are as stated below next to their name; and (2) I believe the inventor(s) named below to be the original and first inventor(s) of the subject matter which is claimed and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on the invention titled: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본 발명의 특허신청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의 허락하에 작성되었으며,
 the application of which was made or was authorized to be made by me and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is attached hereto

또는
 OR

(월/일/년)에 미국 특허신청 번호 또는 ,PCT 국제 특허신청 번호 _____로 출원되었으며 _____
 (월/일/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was filed on (MM/DD/YYYY) _____ as United States Application Number or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_____ and was amended on (MM/DD/YYYY) _____ (if applicable).

본인은 위에 기재된 보정사항에 의거 보정된 특허청구 범위를 포함하여, 위에 기재된 명세서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해하였음을 선언합니다.
 I hereby state that I have reviewed and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above identified application, including the claims, as amended by any amendment specifically referred to above.

본인은 일부출원 지속에 대한 특허성을 포함한 37 CFR 1.56의 규정에 의거한 특허성에 대한 중대한 정보, 즉 선출원의 출원일과 일부출원 지속의 국내 또는 PCT 국제 출원일 사이에 사용가능하게 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인지합니다.
 I acknowledge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o patentability as defined in 37 CFR 1.56, including for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s, material information which became available between the filing date of the prior application and the national or PCT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the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선언서 –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서
DECLARATION —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참여 사무소의 특허 출원에 대한 접속 허용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Application by Participating Offices

선택 표시를 하는 경우, 서명인은 미국특허청 (USPTO)가 위에 기재된 특허 출원에 대한 접속권한을, 위의 특허 출원에 대한 해외 우선권 출원 신청이 접수된 유럽 특허청 (EPO), 일본 특허청 (JPO), 대한민국 특허청 (KIPO) 세계 지적재산권 사무소 (WIPO)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7 CFR 1.14(c) 및 (h)를 참조하십시오. 출원인이 위에 기재된 특허 출원에 대한 해외 우선권 출원 신청이 접수된 EPO, JPO, KIPO, WIPO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무소가 위에 기재된 특허 출원에 접속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선택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37 CFR 1.14(c)에 의거, 아래 사항에 관하여 위에 기재된 특허출원의 복사본에 대한 접근권이 제공됩니다

1) 출원상태 그대로의, 위에 기재된 특허출원 2) 37 CFR 1.55의 확인 사본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출원 사본이 위에 기재된 미국 출원에서 제출된 경우, 35 U.S.C. 119(a)-(d)에 의거 위에 기재된 특허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 출원; 및 3) 위에 기재된 특허출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출원상태 그대로의 미국 출원

37 CFR 1.14(c)에 의거, 참여 사무소의 특허출원에 대한 접속 허용 제출일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속권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If checked, the undersigned hereby grants the USPTO authority to provide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 and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 which a foreign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to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is filed access to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See 37 CFR 1.14(c) and (h). This box should not be checked if the applicant does not wish the EPO, JPO, KIPO, WIPO,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which a foreign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to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is filed to have access to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37 CFR 1.14(h)(3), access will be provided to a copy of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with respect to: 1)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as-filed; 2) any foreign application to which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claims priority under 35 U.S.C. 119(a)-(d) if a copy of the foreign application that satisfies the certified copy requirement of 37 CFR 1.55 has been filed in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and 3) any U.S. application-as-filed from which benefit is sought in the above-identified paten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37 CFR 1.14(c), access may be provided to information concerning the date of filing the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Application by Participating Offices.

해외 우선권 이익의 주장

Claim of Foreign Priority Benefits

본인은 해외 특허출원(들), 발명자 또는 육종자의 권리 증명서(들)에 대한 35 U.S.C. 119(a)-(d) 또는 (f), 또는 365(b); 아래에 기재되었고 선택표시가 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미국 이외 국가가 지정된 PCT 국제 출원에 대한 365(a); 특허출원, 발명자 또는 육종자의 권리 증명서(들);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일 이전에 접수된 PCT 국제 출원에 의거 해외 우선권 이익을 주장합니다.

I hereby claim foreign priority benefits under 35 U.S.C. 119(a)-(d) or (f), or 365(b) of any foreign application(s) for patent, inventor's or plant breeder's rights certificate(s), or 365(a) of any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which designated at least one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sted below and have also identified below, by checking the box, any foreign application for patent, inventor's or plant breeder's rights certificate(s), or any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ving a filing date before that of the application on which priority is claimed.

| 해외 선출원 번호 Prior Foreign Application Number(s) | 국가 Country | 해외 출원일 (월/일년) Foreign Filing Date (MM/DD/YYYY) |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우선권 Priority Not Claimed | 공인 복사본 첨부 여부 Certified Copy Attached? | |
|---|---------------|---|--|--|--------------------------|
| | | | | 예 YES | 아니오 NO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추가 해외 출원번호(들)는 첨부된 우선권 자료 보충 용지 PTO/SB/02B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dditional foreign application number(s) are listed on a supplemental priority data sheet PTO/SB/02B attached hereto.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선언서 –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서
DECLARATION —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 | | | | | | |
|--|--------------------------|--|--|--------------|--------------------------|---|
| 모든 통신문 송부처 Direct all Correspondence to: | <input type="checkbox"/> | 고객번호 관련 주소 The address Associated with Customer Number: | | 또는 OR | <input type="checkbox"/> | 아래 기재된 통신문용 주소 Correspondence address below |
| 이름 Name | | | | | | |
| 주소 Address | | | | | | |
| 시 City | | 주 State | | 우편번호 Zip | | |
| 국가 Country | | 전화번호 Telephone | | 이메일 Email | | |

주의사항
WARNING:

청구인/출원인은 특허 출원문서에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번호, 은행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 (지불용으로 제출되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 승인양식 PTO-2038 제외)와 같은 개인정보는 미국 특허청이 청구 또는 출원을 지원할 때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되는 문서에 포함되는 경우, 청구인/출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이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서의 개인정보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공개(37 CFR 1.213(a))에 따라 출원서에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권 발급 후에는 일반인이 특허출원에 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청구인/출원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더욱이 공개된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권에서 참조되는 경우에는 포기한 출원의 기록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 CFR 1.14 참조). 지불 용도로 제출되는 수표 및 신용카드 승인 양식 PTO-2038 은 출원 파일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작성한 이 문서의 모든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고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모든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고의적인 허위진술 등의 경우 18 U.S.C. 1001 에 의거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의 경우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의 유효기간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동 선언서의 내용에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18 U.S.C에 의거, 벌금형, 오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Petitioner/applicant is cautioned to avoid submitting personal information in documents filed in a patent application that may contribute to identity thef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bank account numbers, or credit card numbers (other than a check or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is never required by the USPTO to support a petition or an application. If this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documents submitted to the USPTO, petitioners/applicants should consider redacting such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ocuments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SPTO. Petitioner/applicant is advised that the record of a patent applic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after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unless a non-publication request in compliance with 37 CFR 1.213(a) is made in the application) or issuance of a patent. Furthermore, the record from an abandoned application may also be available to the public if the application is referenced in a published application or an issued patent (see 37 CFR 1.14). Checks and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s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are not retained in the application file and therefore are not publicly available.

I hereby declare that all statements made herein of my own knowledge are true and that all statements made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believed to be true; and further that these statements were made with the knowledge that willful false statements and the like so made are punishable by fine or imprisonment, or both, under 18 U.S.C. 1001 and that such willful false statements may jeopardize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r any patent issued thereon.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선언서 -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서
DECLARATION —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 | | | |
|---|------------|---|-------------------|
| 단독 또는 선발명자의 이름 NAME OF SOLE OR FIRST INVENTOR: | | <input type="checkbox"/> 본 무서명 발명자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음. A petition has been filed for this unsigned inventor | |
| 이름 (이름 및 중간이름 (있을 경우)) Given Name (first and middle if any) | | 성 Family Name or Surname | |
| 발명자의 서명 Inventor's Signature | | 날짜 Date | |
| 거주지: 시 Residence: City | 주 State | 국가 Country | 국적 Citizenship |
| 우편 주소 Mailing Address | | | |
| 시 City | 주 State | 우편번호 Zip | 국가 Country |
| <input type="checkbox"/> 추가 발명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첨부된 _____ 보충용지 PTO/SB/02A 또는 02R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dditional inventors or a legal representative are being named on the _____ supplemental sheet(s) PTO/SB/02A or 02LR attached hereto | | | |

사생활 보호법 선언문

1974년 사생활 보호법(P.L. 93-579)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 관계 첨부 양식의 제출과 관련하여 귀하가 특정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본 정보의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는 35 U.S.C. 2(b)(2) 입니다; (2) 요청 정보의 제공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3) 미국 특허청이 본 정보를 이용하는 주 목적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한 귀하의 제출서류를 처리 및/또는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귀하의 제출서류를 처리 및/또는 심사하지 못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종료, 출원의 포기 또는 특허의 만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양식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의 일상적인 이용에만 제공됩니다.

1. 본 양식의 정보는 정보자유법(5 U.S.C. 552) 및 사생활보호법(5 U.S.C. 552a) 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취급될 것입니다.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들은 기록에 대한 공개가 정보자유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본 기록시스템상의 기록은 타협협상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를 포함, 법정, 판사 또는 행정재판소에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본 기록시스템상의 기록은 개인이 기록의 주제와 연관되어 의회의원의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기록과 관계있는 개인과 관련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의회의원에게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 계약자에게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수령자는 5 U.S.C. 552a(m) 에 의거 보정된 1974년 사생활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특허협력조약에 의거 제출된 국제출원과 관련한 본 기록시스템상의 기록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6. 본 기록시스템상의 기록은 국가안보심사 (35 U.S.C. 181) 목적 및 원자력법에 의거한 심사 (42 U.S.C. 218(c)) 를 위해 다른 연방정부기관에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7.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미국 총무처가 44 U.S.C. 2904 및 2906에 근거하여 기록 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권고 의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검사 기간 동안 미국 총무처 국장 또는 피지명자에게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기록 검사 및 다른 관련 (예: 미국 총무처 또는 상무부) 명령에 적용되는 미국 총무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8.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35 U.S.C. 122(b) 에 의거한 출원 공고 또는 35 U.S.C. 151 에 의거한 특허권 발급 후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 포기된 출원서에 기록이 제출되었거나 소송절차가 종결되었고 공람 중인 공개된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에 의해 참조되는 경우에는 37 CFR 1.14 의 제한에 의거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기록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9. 본 기록시스템상의 기록은 미국 특허청이 법 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될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집행기관에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 될 수 있습니다.